

##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

<b>소송종류</b>	행정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19구합○○○○○ [1심]	<b>사건유형</b>	학교폭력
<b>원고</b>	□□□	<b>피고</b>	△△△△△학교장
<b>판결선고일</b>	[1심]2020. 5. 29. 원고패	<b>비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p>○ 원고 등은 2019. 4. 13부터 소외 ◎◎◎에게 행한 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2019. 5. 20.경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됨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. 5. 30. 원고 외 ○○○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의하였고, 피고는 2019. 6. 3. 자치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처분을 하였음.</p> <p>○ 원고는 2019. 6. 18.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,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. 7. 22. 청구기각 재결을 함. 원고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</p>		
<b>주 문</b>	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<b>판결이유</b>	<p>○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</p> <p>- 구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,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‘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을 위촉할 수 있는 바, 3년 이상 배움터지킴이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☆☆은 법률에서 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</p> <p>- △△△학교 생활안전부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△△△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인 사실, 위 교사는 원고와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, 이 사건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생활안전부장이 원고와 피해학생을 상담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</p> <p>○ 비례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</p> <p>- 자치위원회와 피고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및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이 사건 행위의 내용, 원고의 관여 정도,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도, 이 사건 행위 후 원고와 피해학생이 주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, 원고의 나이, 개선가능성 등 모든 정황을 살펴보더라도</p>		

	<p>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원고가 겪은 학교폭력 사안과 이 사건은 그 행위의 내용, 태양, 피해정도 등이 달라 편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처분이 과거 처분보다 월등히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</p> <p>○ 평등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</p> <p>- 이 사건 행위에 원고의 관여 정도가 관련 학생들보다 중하고, 원고의 단독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관련 학생들 중 원고에게 가장 중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</p>
<p><b>결 론</b></p>	<p>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